

인권단체 연석회의

저장평화인권예술행위위원회/구속노동자후원회/광주인권운동센터/군경의문사진상규명과폭력근절을위한가족협의회/다산인권센터/대항지구화행동/동성애자인권연대/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주주의법학연구회/부산인권센터/불교인권위원회/빈곤과차별에저항하는인권운동연대/사회진보연대/새사회연대/아시아평화인권연대/안산노동인권센터/에이즈인권모임나누리+/외국인이주노동자대책협의회/울산인권운동연대/원불교인권위원회/이주노동자인권연대/인권과평화를위한국제민주연대/인권운동사랑방/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장애인노동권쟁취를위한연대회의/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전북평화와인권연대/전쟁없는세상/진보네트워킹센터/천주교인권위원회/평화인권연대/한국DPI(한국장애인연맹)/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전국 36개 단체)

수신: 각 언론사 사회부, 정치부

발신: 인권단체 연석회의(담당: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박래군, 016-729-5363)

제목: 국가인권위 비전선포식에 즈음한 인권단체 성명

발신일: 2006년 3월 13일(월)

총매수: 3매

<성명>

국가인권위원회는 뼈아픈 각성과 환골탈태에 나서야 한다.

- 국가인권위원회의 비전선포식에 즈음하여

오늘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증진 행동계획'(2006-2008)이라는 이름으로 향후 3년간 인권위의 업무전략과 실천계획을 발표하는 비전선포식을 갖는다. 국가인권위가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이라는 종착지를 향한 새로운 여정을 다짐하며 축포를 쏘아 올리는 이 때, 그 누구보다 이를 반겨야 할 우리 인권단체들은 씩씩함을 넘어 위태로운 심경으로 국가인권위의 2차 출항을 지켜본다.

국가인권위가 제시한 항로는 휘황찬란하면서도 비장하기조차 하다. 가난하고 억압받는 이들의 인권 증진을 위한 발걸음을 재촉하겠다는 다짐, 문턱을 낮추고 믿음직한 권리구제기관으로 거듭나겠다는 다짐, 수동적으로 개별 진정사건을 해결하는 데 안주하지 않고 인권이 침해되는 현장을 직접 찾아가 인권옹호와 예방 활동을 적극 벌여나가겠다는 다짐 등 어느새 설립 5년째로 접어든 국가인권위가 충실한 인권감시·옹호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한 과제들을 비교적 충실히 뽑아 냈다. 무엇보다 이 모든 과제를 실행에 옮기는 과정에서 스스로 몸을 낮추고 인권단체를 비롯한 인권진영과의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다는 데 우리는 주목한다.

하지만 그 시작을 알리는 뜻은 인권단체들의 기대와 지지 속에 힘차게 울려지지 못했다. 지난해 9월 인권단체 활동가와 개인 전문가가 외부위원으로 대거 참여한 가운데 '발전기획단'이 처음 꾸려졌을 무렵만 하더라도 우리 인권단체들은 2기 국가인권위가 합선을 수리하고 새로운 항로를 개척

하는 데 비판과 협력을 아끼지 않으려는 의지를 갖고 있었다. 민간초청 워크숍을 거쳐 국가인권위의 혁신과제를 함께 도출하자는 인권단체들의 요구를 받아들인 데 이어 아예 국가인권위 설립 4주년 기념행사의 일환으로 워크숍을 열겠다는 소식이 전해졌을 때에는, 그간 관료주의적 독선과 폐쇄의 늪에 빠져있던 국가인권위가 비로소 인권현장의 목소리를 존중하는 기관으로 거듭나고자 하는 의지를 실감할 수 있었다.

그러나 그로부터 2개월 남짓 후, 인권위원들은 발전기획단의 존재 의의와 논의 역사를 전면 부정하고 워크숍마저 사무처 차원의 실무 워크숍으로 격하시켜 버렸다. 인권단체들의 비판 성명에 대해 일언반구 답변도 하지 않은 채, 발전기획단을 일방적으로 해소해 버렸다. 그리고 5인의 인권위원으로 구성된 특별위원회라는 폐쇄적 단위에서 오늘 발표될 '인권증진 행동계획'이 최종 잉태됐다. 그러면서도 국가인권위는 비전선포식을 앞두고서야 인권단체들을 부랴부랴 환영인파로 나와 달라 초청하면서 마치 이 계획이 인권단체들의 전폭적인 협력과 지지 속에서 마련된 것인 양 치장하고자 했다. 필요할 때만 인권단체를 들러리세우는 태도야말로 가장 먼저 청산되어야 할 2기 국가인권위의 과제라고 우리는 주장한다.

나아가 최근 국가인권위가 보여 온 행보는 향후 국가인권위의 좌초를 부를 압초가 바깥이 아닌 안으로부터 비롯되고 있음을 우려케 한다. 불과 얼마 전, 군부대 내에서 동성애자라는 이유로 심각한 인권침해에 시달리다 자살까지 결심하고 휴가를 나온 A씨를 긴급 구제해 달라는 요구를 국가인권위는 차갑게 외면했다. 지난 12월 전용철-홍덕표 두 농민이 경찰력의 폭압에 생목숨을 잃었을 때 국가인권위는 경찰의 과잉진압을 인정하면서도 최종 책임자인 경찰청장에 대해서는 아무런 책임도 묻지 않는 어이없는 결정을 내렸다. 공소시효배제입법에 대해서도 껍데기뿐인 법 논리 뒤에 숨어 애초 법안보다 더 후퇴된 의견을 내놨고, 아노아르 이주노조 위원장을 불법적으로 표적 연행한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대해서도 면죄부를 부여한 바 있다. 번뜩이는 인권감수성으로 인권피해자들의 곁에서 권력기관과 맞장을 때야 할 국가인권위가 오히려 권력기관의 사정을 살피는 데만 열심인 형국이다.

지금은 국가인권위가 비전선포식과 같은 이벤트를 열 때가 아니라, 뼈아픈 각성과 결단의 고백이 필요할 때다. 특히 국가인권위를 이끌고 있는 인권위원들은 인권이 짓밟히고 있는 현장을 직접 찾아가고 인권단체의 의견과 경험에 귀 기울여 자신들의 빈약한 인권의식과 감수성부터 쇠신해야 한다. 그리하여 국가인권위 전체 구성원이 인권 정신에 헌신할 수 있는, 진정한 환골탈태의 계기로 살아야 할 것이다.

나아가 오늘 발표되는 인권증진행동계획이 문서 속에서 걸어 나와 현실이 되기 위해서는 자신에게 가장 엄격한 칼날을 들이대고 자신의 몸을 스스로 도마 위에 던져 비판을 경청하겠다는 결연한 의지를 보여야 한다. 인권증진행동계획에는 '위원회 활동에 대한 외부 평가체계를 확립하겠다.'는 다짐도 포함돼 있다. 이 다짐의 가장 중요하고도 우선적인 대상은 바로 오늘 발표되는 인권증진행동계획이 되어야 할 것이다. 국가인권위 내부에 집행과 모니터를 담당할 책임단위를 마련하고 인권

현장의 평가와 고언을 듣는 정기적 통로를 마련할 때만 오늘의 비전선포식이 결만 번지브르한 이벤트에 그치지 않을 수 있다.

지금 국가인권위는 앞으로 새로운 향로를 개척하며 순항하느냐, 아니면 잘못된 향로를 고집하다 결국 좌초하느냐 하는 중차대한 기로에 서 있다. 국가인권위가 스스로 만든 압초에 걸려 좌초되지 않으려면 인권을 빼앗긴 이들의 신뢰와 지지를 얻진 삼아, 인권단체들의 경험과 목소리를 나침반 삼아 나아가야 한다. 인권단체들의 지지를 얻지 못한 오늘의 이 초라한 비전선포식을 뼈아프게 받아들이고, 인권위원들을 비롯해 국가인권위 전체 구성원이 진정한 자기 개혁에 나설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2006년 3월 13일

인권단체 연석회의

거창평화인권예술제위원회/구속노동자후원회/광주인권운동센터/군경의문사진상규명과폭력근절을위한가족협의회/다산인권센터/대항지구화행동/동성애자인권연대/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주주의법학연구회/부산인권센터/불교인권위원회/빈곤과차별에저항하는인권운동연대/사회진보연대/새사회연대/아시아평화인권연대/안산노동인권센터/에이즈인권모임나누리+/외국인이주노동자대책협의회/울산인권운동연대/원불교인권위원회/이주노동자인권연대/인권과평화를위한국제민주연대/인권운동사랑방/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장애인노동권쟁취를위한연대회의/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전북평화와인권연대/전쟁없는세상/진보네트워크센터/천주교인권위원회/평화인권연대/한국DPI(한국장애인연맹)/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전국 36개 단체)

인권위 비전 선포식(종합)

<<인권단체 비판성명 추가>>

(서울=연합뉴스) 조성미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는 13일 인권위 배움터에서 비전 선포식을 열고 인권위 3대 사명, 향후 3년 간 '인권증진 행동계획' 등을 발표했다.

이날 공표된 비전은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 - 모든 사람의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국가인권위원회'이며, 3대 사명은 ▲인권침해 가능성 있는 권력 감시 ▲헌법과 국제인권규범에 부합하는 인권 원칙 실현 ▲인권존중 문화 구축이다.

인권위는 행동계획의 5대 목표로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인권보호 강화, 국제적 수준의 인권 제도와 관행 구축, 권리구제 접근성·실효성 제고, 인권교육 강화, 역량 강화를 선정하고 이를 뒷받침할 44개 세부과제를 정했다.

인권위는 지난해 8월 학계, 법조계, 인권단체 등 외부 전문가 15명이 참여한 발전기획단과 인권위원으로 구성된 발전전략기획 특별위원회를 설치, 약 6개월 간 인권위 비전 등을 논의해 왔다.

한편 인권위 비전 발표에 대해 36개 인권단체가 모인 인권단체연석회의는 성명을 내고 "인권위가 인권단체 등이 참여한 발전기획단은 출범 직후 역할을 축소하고 인권위원으로 구성된 특별위원회 중심으로 계획을 짰다"고 비판했다.

helloplum@yna.co.kr

(끝)

송고일 : 20060313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 만들 것"

인권위, 업무수행 지침서 '인권증진 행동계획' 발표

이철우 기자 cyberedu@paran.com



▲인권위 인권증진행동계획 선포식이 13일 인권위 배움터에서 열렸다. 참가자들이 '인권위 9개 운영원칙'이 담긴 종이비행기를 날리며 운영원칙을 공유하는 상징의식을 벌이고 있다. ©이철우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위원장 조영황)는 13일 오전 인권위 배움터에서 독립성, 책무성, 투명성, 접근성, 다양성 등 9가지 운영원칙과 행동계획을 담은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증진 행동계획(행동계획, 2006~2008)'을 발표했다.

인권위는 이날 열린 비전 선포식에서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모든 사람의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국가인권위원회'라는 비전과 함께 ▲ 인권침해 가능성이 있는 권력 감시 ▲ 헌법과 국제인권규범에 부합하는 인권의 원칙과 기준 실현 ▲ 인권이 존중되는 문화 토대 구축을 3대 운영 지표로 삼겠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또 ▲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인권보호 강화 ▲ 국제 수준의 인권제도와 관행 구축 ▲ 권리구제 접근성과 실효성 제고 ▲ 인권의식 함양을 위한 인권교육 강화 ▲ 위원회 역량 강화들을 5대 목표로 삼아 앞으로 3년간 위원회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인권위 5대 목표를 위한 주요 세부과제들을 살펴보면 '차별금지법 제정'과 '맞춤형 인권상담체계 구축', '국제인권기준에 따른 국내법 실태조사와 정비', '주요재판과 입법에 대한 적극 의견개진', '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법·제도 개선', '학교교육과정·공공부문종사자 인권교육 의무화', '사이버 인권교육 강화' 등이다.

인권위는 특히 "인권위 구성원에게는 인권의 가치와 실현을 위해 특별히 높은 '인권감수성'이 필요하다"며 "특정 상황에서 신속하게 인권의 가치를 발견하고 그 해결을 위해 반응하는 자세를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은희 덕성여대 총장(전 여성가족부 장관)은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이라는 비전은 지극히 당연하면서도 중요한 것으로 삶속에 녹아들어 살아 숨 쉬는 인권이 되길 바란다"며 "비전 선포를 계기로 인권위가 더 강화되어 인권을 상식으로 만드는 버팀목이 되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박경석 장애인이동권연대 대표는 '모든 사람의 인권을 보호 증진한다'는 비전을 거론하며 "재벌이나 가

말이 통하는 세상 - 김길호
진 자들과 밑바닥에 사는 장애인을 비롯한 가난한 사람들의 인권 무게는 다를 것"이라고 강조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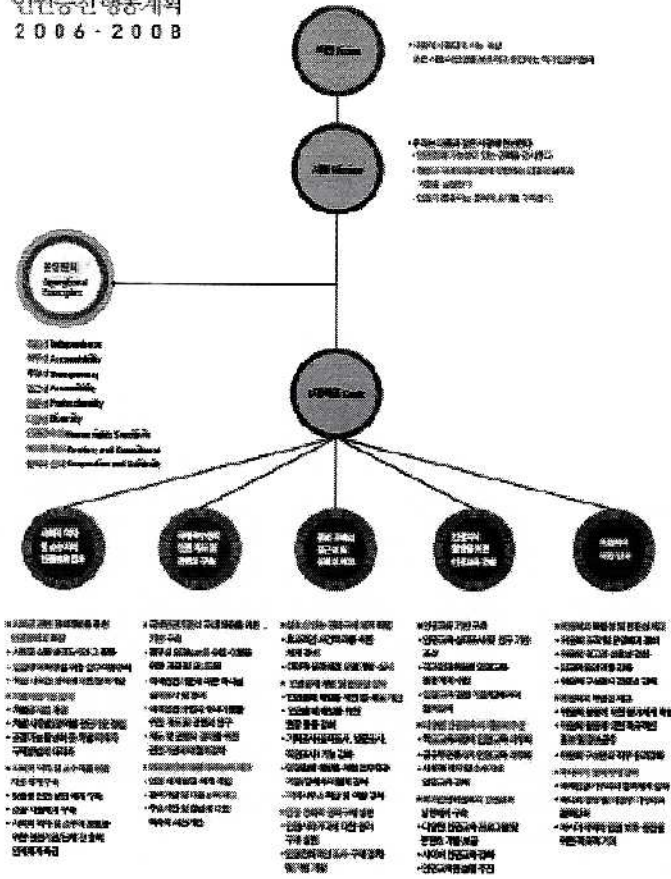
이날 발표한 행동계획은 인권위가 지난해 8월 발전기획단(학계, 법조계, 인권단체를 비롯한 외부 전문가 15명 참여)을 설치해 초안을 만들고, 인권위원으로 구성된 발전전략기획 특별위원회에서 약 6개월간 논의를 거쳐 마련되었으며, 앞으로 위원회 모든 구성원들의 업무수행 지침서 역할을 하게 된다.

이날 행동계획 선포식에는 조영황 인권위 위원장, 최영애 상임위원, 정강자 상임위원 등 인권위 관계자와 박정기 씨(전 유가협회장, 고 박종철 열사 아버지), 송두완 전 민변회장, 이창수 새사회연대 대표, 임기란 민가협 고문, 지은희 덕성여대 총장(전 여성부 장관), 박경석 장애인 이동권연대 대표 등 약 100여 명이 참여했다.



▲박경석 장애인이동권연대 대표는 "장애인 인권은 보호가 아닌 보장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이철우 기자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증진 행동계획
2006 - 2008



▲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증진 행동계획 2006~2008. © 인권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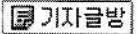
기사입력시간 : 2006년 03월 13일 [03:30]

한겨레홈 > 뉴스 > 사회 > 인권·복지

인권위 “사회적 약자 보호 강화”

‘인권증진 행동계획 2006~2008’ 발표

[한겨레]

+ 박용현 기자  기자글방



▲ 설립 5주년을 맞은 국가인권위원회가 13일 오전 서울 중구 무교동길 인권위 배움터에서 연 ‘비전 선포식’에서 조영황 위원장(앞줄 맨 오른쪽) 등 참석자들이 앞으로 3년간의 인권위 운영원칙이 적힌 종이비행기를 날리고 있다. 김태형 기자 xogud555@hani.co.kr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조영황)는 13일 인권위 배움터에서 비전 선포식을 열고, 앞으로 3년동안의 활동계획인 ‘인권증진 행동계획 2006~2008’을 발표했다.

인권위는 3년동안 역량을 집중할 5대 목표로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의 인권보호 강화 △국제적 수준의 인권제도 및 관행의 구축 △권리구제의 접근성 및 실효성 제고 △인권의식 함양을 위한 인권교육 강화 △위원회의 역량 강화 등을 제시했다.

이를 위해 핵심 사회권 영역에 대한 정책개발, 주요 재판 및 입법에 대한 적극적 의견 개진, 인권 침해 예방을 위한 현장활동 강화, 학교 교육과정에 인권교육 의무화 등에 힘쓰기로 했다.

또 인권위는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모든 사람의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국가인권위원회’라는 비전을 제시하고 인권위의 3대 사명으로 △인권침해 가능성 있는 권력 감시 △헌법과 국제 인권규범에 부합하는 인권 원칙 실현 △인권존중 문화 구축 등을 꼽았다.

반면, 36개 인권운동단체로 구성된 인권단체연석회의는 이날 성명을 내어 “최근 인권위가 군
복무중인 동성애자의 긴급 구제 요구를 외면하고, 농민시위 과잉진압에 대해 경찰청장의 책임
을 묻지 않는 등 권력기관의 사정을 살피는 데만 열심인 형국”이라며 “특히 인권위를 이끌고
있는 인권위원들은 인권이 짓밟히고 있는 현장을 직접 찾아가고 인권단체의 의견과 경험에 귀
기울여, 자신들의 빈약한 인권의식과 감수성부터 쇠신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박용현 기자 piao@hani.co.kr



(살핀 컴퓨터, PC 다이어트하세요!)

기사등록 : 2006-03-13 오후 07:46:48

© 한겨레 (<http://www.hani.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프린트하기



인권위, 비전 선포식 갖고 새출발 다짐

인권단체들 "권력기관 눈치 보기 중단해야" 비판

등록일자 : 2006년 03 월 13 일 (월) 17 : 13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조영황)는 13일 인권위가 향후 3년간(2006~2008) 역량을 집중할 '인권위 인권증진 행동계획'을 발표하는 등 비전선포식을 갖고 새 출발을 예고했다.

하지만 인권단체들은 "그 누구보다 반겨야 할 입장이지만 씁쓸함을 넘어 위태로운 심경으로 인권위의 2차 출항을 지켜 본다"며 쓴소리가 담긴 성명을 내놓았다.

인권위, 3개년 인권증진 행동계획 발표

인권위는 이날 오전 인권위 배움터에서 열린 '비전선포식'에서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 - 모든 사람의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국가인권위원회'를 새로운 '비전'으로 밝혔다.

인권위는 이어 △인권침해 가능성이 있는 권력을 감시하고 △헌법과 국제 인권규범에 부합하는 인권의 원칙과 기준을 실현하며 △인권이 존중되는 문화적 토대를 구축하는 것을 3대 사명으로 제시했다.

인권위는 또한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의 인권보호 강화 △국제적 수준의 인권제도 및 관행의 구축 △권리구제의 접근성 및 실효성 제고 △인권의식 함양을 위한 인권교육 강화 △위원회의 역량 강화를 5대 목표로 내세웠다.

또한 인권위는 5대 목표 실현을 위한 44개 세부 과제를 제시하기도 했다.

조영황 인권위 위원장은 이날 "국가 영역에서는 불모지에 가까웠던 인권의 땅을 개척한 지난 3년여 간의 정신을 새롭게 새기고 인권위의 사회적 역할을 더욱 충실히 할 것을 약속한다"고 말했다.

인권단체 "권력기관의 사정을 살피는 데 골몰해서야" 쓴소리

한편 인권운동사랑방, 평화인권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등 전국 36개 인권단체로 구성된 '인권단체연석회의'는 인권위의 비전 선포식에 앞서 배포한 성명을 통해 인권위를 향해 '쓴소리'를 했다.

이들은 우선 인권위가 이날 제시한 '비전'과 '행동계획' 등에 대해 "인권감시·옹호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한 과제들을 비교적 충실히 뽑아 냈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필요할 때만 인권단체를 들러리 세우는 태도야말로 가장 먼저 실천돼야 할 2기 인권위의 과제"라고 인권위에 유감을 표명했다.

이들의 유감표명은 그간 인권위가 '폭넓은' 의견수렴을 한다고 밝히면서도 정작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인권단체의 의견을 외면해 왔다는 데 연유한 것이다. 또한 인권위가 국가기관으로서의 한계 혹은 권한상의 한계 등을 말하면서 소신 있는 모습을 보이지 못한다는 데 대한 인권단체들의 불만도 이날 성명서에 반영됐다.

한 예로 지난 12월 전용철·홍덕표 두 농민이 경찰의 과잉진압에 의해 사망한 사건에 대해 인권위는 경찰의 과잉진압 사실을 문제 삼으면서도 정작 그 책임자인 경찰청장에 대해서는 아무런 책임 추궁도 하지 않아 인권단체들의 격렬한 반발을 야기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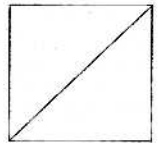
박래군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는 이날 <프레스시안> 과의 인터뷰에서 "인권위의 결정 중
에 인권단체나 인권피해자의 기대에 못 미치는 경우가 있었던 것이 사실"이라며 "번뜩이는 인
권 감수성으로 인권피해자들의 곁에서 권력기구와 맞장을 떠야 할 인권위가 오히려 권력기관
의 사정을 살피는 데만 열심인 형국"이라고 말했다.

인권단체연석회의의 이같은 쓴소리에 대해 인권위의 한 관계자는 "인권위가 국가기관으로서
의 한계와 더불어 '권고' 기능만 수행할 수 있는 권한상의 한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인권위와
인권단체 사이의 갈등이 야기되고 있다"며 "하지만 인권위와 인권단체 간의 건강한 비판과 협
력 관계는 앞으로도 유지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경락/기자

© 2001-2006 PRESSian. All right reserved.

국가인권위원회 전원위원회



의안번호	제06-03호
보 고 연 월 일	2006. 2. 13. (06년 제3차)

보
고
안
건

국가인권위원회 업무전략기획(안) 보고

제 출 자	발전전략기획 특별위원회
제출년월일	2006. 2. 13.

국가인권위원회 업무전략기획(안) 보고

1. 제2차 전원위원회(1. 23.) 결정 내용

○ 상정된 위원회 업무전략기획(안)을 의결함. 단, 다음 사항에 대하여 「발전전략기획 특별위원회」(이하 '특위')가 검토·결정하고, 그 내용을 차기 전원위원회(이하 '전원위')에 보고함.

- 위원회 사명 중, "인권침해 가능성이 있는 모든 권력을 감시한다."의 취지는 의결하되, 특위가 문구를 적절하게 수정
- 업무전략기획 총괄표의 내용을 풀어 쓴 Full Text는 특위와 전원위 논의의 취지를 잘 반영하여 수정·보완 함.

2 특위 논의 결과

가. 위원회 사명("인권침해 가능성이 있는 모든 권력을 감시한다.")에 대한 검토

⇒ 전원위에 복수 수정(안) 상정

○ 전원위 상정안(4개)

("인권침해 가능성이 있는 모든 권력을 감시한다." (기존)] →

- "인권침해 가능성이 있는 권력을 감시한다."] → ^{각각으로} ~~각각~~ ^{이유} but ^{각각} ~~각각~~ ^{안도}

- "인권침해 권력을 감시한다."

- "인권 보호 증진을 위해 필요한 모든 권력을 감시한다."

나. 기획(안) 명칭 관련

⇒ 현 “대한민국 국가인권위원회 업무전략기획(안)(2006년-2008년)” 명칭은 부적절하므로, 전원위에 복수 수정(안) 상정

○ 전원위 상정안(4개)

- “대한민국 국가인권위원회 업무전략기획(2006년-2008년)”(기존)
- “대한민국 국가인권위원회 2006년-2008년 인권증진(실천)계획”
- “대한민국 국가인권위원회 2006-2008 인권증진행동계획”) 의견
- “대한민국 국가인권위원회 5대 목표 전략계획”

다. Full Text 검토

⇒ 3차 전원위까지 특위 논의사항을 반영하여 가능한 범위 내에서 Full Text 내용을 보완 하도록 하고, 시간이 부족할 경우 전원위에서 양해를 구하고 시간을 가지고 보완함.

※ 특위 세부 논의사항은 붙임 제8차 특위 개최 결과 참조

3. 논의 사항

가. 위원회 사명 결정(2쪽 전원위 상정안 참조)

나. 기획(안)의 명칭 결정(위 전원위 상정안 참조)

다. 최종 Full Text에 대한 전원위 승인절차

붙임 1. 제8차 발전전략기획 특별위원회 회의개최 결과 보고 1부.

2. 대한민국 국가인권위원회 업무전략기획(안)(2006년~2008년) 1부. 끝.

붙임 1.

제8차 발전전략기획 특별위원회 회의개최 결과 보고

1. 회의개요

- 일 시 : 2006. 2. 9.(목) 10:30~12:00 (1시간 30분)
- 장 소 : 전원회의실
- 참석인원(11인)
 - 특별위원회 위원장
 - 특위위원(2인) : 정강자, 김호준 상임위원
 - 사무처(8인) : 사무총장, 박찬운, 나영희 본부장, 심상돈, 김형완, 임송 팀장, 김정린, 박숙미 사무관

2. 주요 논의사항

가. 위원회 사명("인권침해 가능성이 있는 모든 권력을 감시한다.") 검토

⇒ 전원위원회에 복수(안) 상정 결정

- 전원위 상정안(4개)
 - "인권침해 가능성이 있는 모든 권력을 감시한다." (기준)
 - "인권침해 가능성이 있는 권력을 감시한다." (김호준 위원)
 - "인권침해 권력을 감시한다." (김호준 위원)
 - "인권 보호 증진을 위해 필요한 모든 권력을 감시한다." (김정린 사무관)

나. 업무전략기획(안) 명칭 관련

⇒ 현 “대한민국 국가인권위원회 업무전략기획(안)(2006년-2008년)”은 부적절하므로, 전원 위원회에 복수 수정(안) 상정 결정

○ 전원위 상정안(4개)

- “대한민국 국가인권위원회 업무전략기획(2006년-2008년)”(기존)
- “대한민국 국가인권위원회 2006년-2008년 인권증진(실천)계획”(김호준 위원)
- “대한민국 국가인권위원회 2006-2008 인권증진행동계획”(박찬운 본부장)
- “대한민국 국가인권위원회 5대목표 전략계획”(나영희 본부장)

다. 업무전략기획(안) Full Text에 대한 검토

⇒ 다음주 전원위까지 특위 논의사항을 반영하여 가능한 범위 내에서 Full Text 내용을 보완하도록 하고, 시간이 부족할 경우 전원위에서 양해를 구하고 시간을 가지고 보완해 나가도록 함.

○ Full Text에 대한 주요의견

【최영애 특위 위원장】

- “1. 업무전략기획 작성개요” 부분이, 기획안 작성의 목적, 취지보다는 작성과정 위주로 너무 상세하게 기술되어 있음.
- 전반적으로 실천계획 기술방식이 “1기 반성 ⇒ 2기 계획” 형태인데 적절하지 않음.

※ 이에 대하여, 사무총장이 “1기”, “2기” 라는 표현 방식을 삭제하고, “초기에는”, “향후에는” 등 보다 적절한 방식으로 수정하겠다고 답변

- 기획안의 현행 체계가 적절한지 검토가 필요함.

※ 이에 대하여, 박찬운 본부장이 1. 전략기획 목적(간략하게), 2. 체계도, 3. 전략기획 내용 체계로 수정하겠다고 답변

- 전반부(목표 1, 2)와 후반부(목표 3, 4, 5)의 기술방식이 다름. 전반부가 목표사업의

- 필요성, 당위성 위주로 기술되어 있다면 후반부는 보다 기술적인 사항들을 담고 있음.
서술방식을 일치시킬 필요가 있음. 개인적으로는 후반부의 기술방식을 선호함.
- 세부내용은 핵심 사항 위주로 압축하여 표현할 필요가 있음.

【김형완 팀장】

- "1. 업무전략기획 작성개요" 부분에, "위상강화기획", "역량강화기획" 내용까지 포함되어 있는데 "업무전략기획"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하는 것이 타당함.

라. 2기 위원회 10대 중점추진 과제 선정관련

⇒ 2기 위원회 10대 중점추진 과제는 제시하지 않고, 연도별로 중점추진 과제를 제시하는 것으로 대체함. 사무처는 전원위에 '06 업무계획 상정 시 중점 추진과제(영역)을 제시하도록 함.

마. 기타

- 사명기술 순서 변경, 21.2, 41.3.의 지구 수정 제안에 대해서는 기존(안)을 유지하기로 결정

대한민국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증진 행동계획(2006년-2008년)

= 목 차 =

1. 행동계획(Action Plan) 작성 목적

2. 행동계획 체계도

3. 행동계획 내용

가. 위원회의 비전(Vision)

나. 위원회의 사명(Mission)

다. 위원회의 운영원칙(Operational Principles)

라. 위원회의 5대 목표(Goals)

마. 세부목표 및 실천계획(Sub-goals & Strategies)



1. 행동계획(Action Plan)의 작성 목적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는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라 "모든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인 인권을 수호하고 그 수준을 향상시킴으로써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하고 민주적 기본질서의 확립"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위원회는 설립 이후 지금까지 국가권력 등에 의한 인권침해 행위와 사적 영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차별행위를 조사·구제하는 기본적 역할을 수행하는 한편 인권에 영향을 주는 법령이나 제도 나아가 관행의 개선을 위해 정부 등에 지속적으로 정책 권고를 해 왔다. 나아가 인권의식을 고양시키기 위한 다양한 인권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위의 설립목적을 실천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이 과정에서 위원회는 조직 설립초기에 있을 수 있는 많은 어려움과 다양한 시행착오도 경험했지만 위원회 구성원 모두는 우리 사회의 '인권의 보루'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인권의 최전선을 지킨다는 자세로 맡은 바 임무를 다하고자 노력하였다.

이제 위원회는 설립 5주년을 맞이하였다. 지난 4년간이 위원회의 축성의 시기였다면 이제 위원회는 수성의 시기를 맞이하고 있다. 비행기가 지상을 박차고 이륙하여 하늘을 본격적으로 날아가는 시기에 비유될 것이다. 이 시점에서 위원회는 과거의 활동을 점검하고 그에 기초하여 현 시기와 향후 몇 년간 위원회가 집중해야 할 목표 설정의 필요성을 느낀다. 한정된 역량을 최대한 가동시켜 우리 사회의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한 업무를 해 나가기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선택과 집중'이라는 원칙을 동원하지 않을 수 없다. 대한민국 국가인권위원회는 향후 몇 년 간 어떤 문제의식을 가지고 어떤 목표를 설정하여 어떻게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가.

한편 2006년 초 위원회는 정부에 대하여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을 수립할 것을 권고하고 3년간의 작업 결과인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권고안'을 제시하였다. 국가적으로 인권종합계획을 수립하라고 강력히 요구한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위원회가 자신의 행동계획을 내놓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하며 이는 국민적 요구라고 위원회는 믿는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위원회는 2005년 하반기부터 사무처에 발전기획단이라는 임시조직을 설치하여 외부의 전문가들과 함께 '국가인권위원회 행동계획' 초안을 만들었고 이 초안을 전원위원회에서 점검하였다. 그런 이후 전원위원회는 초안의 세부적인 점검을 위해 인권위원 4인으로 구성된 특별위원회를 만들었으며 특위는 수회에 걸쳐 사무처의 전문가들과 격의 없는 토론을 벌였다. 그 결과 위원회의 향후 3년간 목표를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의 인권보호 등에 맞춘 '인권증진을 위한 국가인권위원회 행동계획안'이 마련되었고, 이 안은 마침내 2006년 1월 23일 전원위원회에서 점검된 후 원안대로 통과되었다.

이러한 목적과 경과 속에 마련된 이 행동계획은 향후 3년간 무릇 우리 위원회의 모든 구성원이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지침서로서의 역할을 할 비전과 목표를 설정하였고 이를 구체화 할 수 있는 세부실천계획을 담았다. 위원회는 이 행동계획이 위원회의 모든 구성원들에게는 말 그대로 행동의 지침서로서, 위원회를 신뢰하는 국민들에게는 인권증진을 위한 위원회의 대국민적 약속으로서 기능하길 바라는 바이다.

2. 행동계획의 체계도 : 다음 쪽 참조

비전
(Vision)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 - 모든 사람의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국가인권위원회



사명
(Mission)

우리는 다음과 같은 사명에 헌신한다.

- 1. 인권침해 가능성이 있는 모든 권력을 감시한다.
- 1. 헌법과 국제인권규범에 부합하는 인권의 원칙과 기준을 실현한다.
- 1. 인권이 존중되는 문화적 토대를 구축한다.



운영원칙
(Operational Principles)

독립성(Independence), 전문성(Professionalism), 다양성(Diversity), 투명성(Transparency), 책무성(Accountability), 접근성(Accessibility), 예의와 헌신(Courtesy and Commitment), 인권감수성(Human rights Sensitivity), 협력과 연대(Cooperation and Solidarity)

5대 목표
(Goals)

1.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의
인권보호 강화

2. 국제적 수준의 인권 제도 및
관행의 구축

3. 권리 구제의 접근성 및
실효성 제고

4. 인권의식 함양을 위한
인권교육 강화

5. 위원회의 역량 강화

세 부목표
(Sub-goals)
및
실천계획
(Strategies)

- 1.1.사회권 관련 정책개발을 통한 인권영역의 확장
- 1.1.1.사회권 상황실태조사와 그 활용
 - 1.1.2.인권영역 확장을 위한 연구역량 강화
 - 1.1.3.핵심 사회권 영역에 대한 정책개발

1.2.차별시정기능 강화

- 1.2.1.차별금지법 제정
- 1.2.2.차별 사유별/영역별 판단기준 정립
- 1.2.3.조정기능 활성화 등 차별 피해자 구제방법의 다각화

1.3.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를 위한 지원체계 구축

- 1.3.1.맞춤형 인권 상담 체계 구축
- 1.3.2.소송 지원체계 구축
- 1.3.3.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 보호를 위한 관련기관 /단체 간 협력 연계체계 촉진

- 2.1. 국제인권기준의 국내 적용을 위한 기반 구축
- 2.1.1.정부의 인권NAP의 수립이행을 위한 자문 및 모니터링
 - 2.1.2.국제인권기준에 따른 국내법 실태조사 및 정비
 - 2.1.3.국제인권 규범의 국내이행을 위한 제도 및 관행의 연구
 - 2.1.4.제도 및 관행의 정비를 위한 관련기관과의 협력강화

2.2.인권현안에 대한 대응능력 제고

- 2.2.1.인권 의제 발굴 체계 확립
- 2.2.2.정책개발 및 대응능력 제고
- 2.2.3.주요재판 및 입법에 대한 적극적 의견제출

- 3.1. 실효성 있는 권리구제 체계 확립
- 3.1.1.효과적인 사건처리를 위한 체계 정비
 - 3.1.2.대안적 분쟁해결 모델 개발·실시

3.2.인권침해 예방 및 현상성 강화

- 3.2.1.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법제도 개선
- 3.2.2.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현장 활동 강화
- 3.2.3.기획조사(실태조사, 방문조사, 직권조사) 기능 강화
- 3.2.4.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업무유관 기관/단체와의 협력 강화
- 3.2.5.지역사무소 확산 및 역할 강화

3.3.인권 친화적 권리구제 실현

- 3.3.1.인권사각지대에 대한 권리구제 실현
- 3.3.2.인권친화적인 조사·구제 절차 및 기법 개발

- 4.1.인권교육 기반 구축
- 4.1.1.인권교육 실태조사 및 연구기반 조성
 - 4.1.2.국가인권위원회 인권교육 종합계획 수립
 - 4.1.3.인권교육 관련 기관/단체와의 협력강화

4.2.다양한 인권교육의 제도화 추진

- 4.2.1.학교교육과정·인권교육 의무화
- 4.2.2.공공부문종사자 인권교육 의무화
- 4.2.3.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의 인권교육 강화

4.3.국가인권위원회의 인권교육 실행체계 구축

- 4.3.1.다양한 인권교육 프로그램 및 콘텐츠 개발·보급
- 4.3.2.사이버 인권교육 강화
- 4.3.3.인권교육원 설립 추진

- 5.1.위원회의 독립성 및 전문성 제고
- 5.1.1.위원회 조직 및 운영체계 정비
 - 5.1.2.위원회 권고의 실효성 강화
 - 5.1.3.인권위원의 역할 강화
 - 5.1.4.위원회 구성원의 전문성 강화

5.2.위원회의 투명성 제고

- 5.2.1.위원회 활동에 대한 평가체계 확립
- 5.2.2.위원회 활동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 및 정보공유
- 5.2.3.위원회 구성원의 직무 윤리강화

5.3.국내외적 협력체계 강화

- 5.3.1.국제인권기구와의 협력체계 강화
- 5.3.2.국내외 정부 및 비정부 기구와의 협력 강화
- 5.3.3.아시아지역의 인권 보호증진을 위한 적극적 기여

3. 행동계획의 내용

가. 위원회의 비전(Vision)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
-모든 사람의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국가인권위원회-

우리 위원회가 추구하는 사회는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이다. 위원회는 그러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모든 사람의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나. 위원회의 사명(Mission)

우리 국가인권위원회 구성원 모두는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을 실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명에 헌신할 것이다.

1. 인권침해 가능성이 있는 모든 권력을 감시한다.
1. 헌법과 국제인권규범에 부합하는 인권의 원칙과 기준을 실현한다.
1. 인권이 존중되는 문화적 토대를 구축한다.

1. 인권침해 가능성이 있는 모든 권력을 감시한다.

위원회는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인권침해가 있을 경우 이를 구제하는 사명을 가지고 있다. 이를 위해 충실한 인권감시기관(human rights watch dog)이 되고자 한다. 위원회가 감시하는 영역은 비단 공권력만이 아니며, 비합리적 차별이 일어나고 있는 거대 기업 등 사영역도 포함된다.

1) 위원회의 비전은, 위원회 설립 초기부터 슬로건으로 사용하던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과, 주요국가 국가인권위원회의 비전(혹은 미션)의 핵심적 내용 “모든 사람의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하며, 증진하는 인권기구”-을 결합함.

1. 헌법과 국제인권규범에 부합하는 인권의 원칙과 기준을 실현한다.

위원회가 지향하는 인권의 잣대는 헌법과 국제인권규범이다. 이 잣대를 사용하여 인권침해의 여부를 잴 것이며 인권증진을 위한 법령 및 제도의 개선을 추구해 나갈 것이다.

1. 인권이 존중되는 문화적 토대를 구축한다.

위원회는 인권의 본질적 신장은 인권문화의 향상에 있음을 인식한다. 따라서 이러한 토대를 구축하기 위해 인권교육 및 홍보에 진력할 것이다.

다. 위원회의 운영원칙(Operational Principles)

독립성(Independence), 전문성(Professionalism), 다양성(Diversity), 투명성(Transparency), 책무성(Accountability), 접근성(Accessibility), 예의와 헌신(Courtesy and Commitment), 인권감수성(Human rights sensitivity), 협력과 연대(Cooperation and Solidarity)

- 1) 독립성 : 위원회는 국가 혹은 사회의 모든 세력 및 위원회 내외의 압력으로부터 독립하여 인권의 보호와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모든 기능과 권한을 행사한다.
- 2) 전문성 : 위원회는 위원회의 임무와 목표, 역할에 대한 확고한 인식을 바탕으로 업무수행을 위한 전문적 지식과 경험 및 기술을 확보하고, 인권의 가치에 헌신하는 인력양성을 위해 투자하며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의 편에서 인권에 관한 문제를 해결한다.

- 3) **다양성** : 위원회는 사회 각 부문으로부터 자격을 갖추고 인권의 가치에 헌신하고자 하는 다양한 인재를 받아들이고, 차이가 존중되는 조직문화를 구현하며, 갈등의 해결방식으로 서 대화와 타협을 지향한다.
- 4) **투명성** : 위원회는 업무수행과 운영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사회 구성원들이 위원회 활동내용을 충분히 알 수 있도록 하고, 인사·재정 운영의 청렴성을 확보한다. 그러나 위원회는 이 과정에서 개인의 명예와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유의한다.
- 5) **책무성** : 위원회는 위원회의 모든 활동이 절차적 정당성뿐만 아니라 인권보호 및 인권상황의 실질적 개선을 가져올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회구성원들에 대한 책임을 다한다.
- 6) **접근성** : 위원회는 위원회에 대한 사회 구성원들의 요구와 바람을 잘 인식하여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등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도록 한다. 위원회는 사회 구성원 모두를 위해 위원회의 문턱을 낮추며, 특히 스스로 위원회를 찾지 못하는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한다.
- 7) **예의와 헌신** : 위원회 구성원은 위원회의 사명과 인권의 가치를 내재화함으로써 인권실현을 위해 헌신하고, 조직의 내·외부 고객에 대하여 항상 예의바른 태도로 신의를 다한다.
- 8) **인권감수성** : 위원회의 구성원에게는 인권의 가치와 실현을 위해 통상인 수준 이상의 인권감성이 요구된다. 특정 상황에서 신속하게 인권의 가치를 발견하고 그 해결을 위해 반응하는 자세를 가질 수 있도록 부단히 노력해야 한다.
- 9) **협력과 연대** : 위원회는 인권분야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국내외 기관/단체/개인 및 잠재적 피해자들의 지지와 연대를 바탕으로 활동한다.

라. 위원회의 5대 목표(Strategic Goals)

- 목표 1.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의 인권보호 기능 강화
- 목표 2. 국제적 수준의 인권제도 및 관행의 구축
- 목표 3. 권리구제의 접근성 및 실효성 제고
- 목표 4. 인권의식 함양을 위한 인권교육 강화
- 목표 5. 위원회의 역량강화

목표 1.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의 인권보호 기능 강화

위원회는 여성, 성적 소수자, 장애인, 외국인, 아동, 노인 등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 위원회의 주된 관심 영역이 되어야 하며, 위원회가 보호해야 할 이들의 권리에는 이들의 시민적·정치적 권리뿐만 아니라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제 권리까지 포함된다는 사실을 깊이 인식하고 있다.

위원회는 그동안 이들이 처한 인권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 이들에 대한 시민적·정치적 권리의 보호, 인권상황에 대한 실태조사, 관련 법령·제도·정책 및 관행의 개선, 이들이 제기한 차별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등 나름대로 노력을 기울여 왔다. 하지만 제한된 자원으로 광범위한 인권이슈에 관여해야만 했던 설립 초기의 위원회로서는 이 분야에 대하여 종합적인 계획 하에 체계적인 접근을 하지 못했다.

위원회는 향후 이 분야에 대한 위원회의 활동을 종합적인 계획 하에 보다 체계적인 방식으로 수행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위원회는 “차별시정 기능 강화”,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를 위한 지원체계 구축” 등 위원회 활동을 위한 기반 구축에 주력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이들의 인권상황에 대한 실태조사와 인권영역 확장을 위한 연구역량의 강화를 기반으로 이들의 인권상황 개선을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개발·시행하고자 한다.

목표 2. 국제적 수준의 인권제도 및 관행의 구축을 위한 기반조성

국가인권위원회법은 “인권이라 함은 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 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위원회가 추구하는 인권이 국내법에서 보호하는 범위를 넘어서 국제적 수준에 부합해야 하는 것임을 명확하게 밝히고 있다. 또한 위원회는 우리가 가입한 주요 국제인권조약의 국내적 이행을 비롯한 국제인권규범의 적극적 수용이 인권보호를 위한 추가적 근거를 제공할 수 있으며, 기존의 국내법적 기준 하에서 적절한 보호를 제공받지 못하던 집단 및 개인에 대해 보호를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으로 믿는다.

위원회는 아직 국내의 많은 인권관련 법령·제도·정책 및 관행이 국제인권기준이 요구하는 수준에 이르지 못하고 있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이 투입되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위원회는 향후 3년 동안 국제적 수준의 인권제도 및 관행의 구축을 위해, “국제인권기준의 국내적용을 위한 기반 구축” 및 “국제인권기준에 따른 국내법 정비”에 주력하고 아울러 “인권현안에 대한 대응능력을 제고”함으로써 우리 사회의 인권수준을 한 단계 높이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목표 3. 권리구제의 접근성 및 실효성 제고

위원회는 국가인권위원회법이 정하는 바대로 인권침해행위 및 차별행위에 대하여 조사·구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았다. 위원회의 조사·구제 활동은 인권침해 행위로 인한 피해자를 위원회가 직접적으로 구제할 수 있는 수단일 뿐만 아니라 이 과정을 통해 인권침해 행위에 대포된 제도상의 문제점을 발견하고, 이의 개선을 위한 활동으로 연결할 수 있기 때문에 개별 피해자의 구제를 위해서 뿐만 아니라 사회의 전반적인 인권상황 개선을 위해서도 매우 중요한 기능이다.

위원회는 그동안 이 분야의 활동을 위해 위원회 역량의 많은 부분을 할애해 왔으며, 이는

기능의 중요성에 비추어 타당한 것이었다고 판단한다. 다만, 과거 4년 동안의 위원회 활동의 결과, 이 분야에 대한 위원회 기능을 보다 효율화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사항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느낀다. 첫째, 보다 다양화되는 조사·구제 서비스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 인권침해 피해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권리구제 체계를 확립한다. 둘째, 진정인에 대한 고품질 서비스 제공을 포함하는 인권친화적인 권리구제 서비스를 제공한다. 셋째, 인권침해 예방활동 및 현장성을 강화하고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의 위원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목표 4. 인권의식 함양을 위한 인권교육 강화

국가인권위원회법은 “위원회는 모든 사람의 인권의식을 깨우치고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인권교육과 홍보를 하여야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사회구성원에 대한 인권교육과 홍보가 위원회의 주요 사명 중에 하나임을 밝히고 있다.

위원회는 인권문화를 확산하고 사회 구성원의 인권의식을 높이기 위한 활동이 인권침해와 차별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근본적인 방법이라는 사실을 깊이 인식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 사회에 인권문화가 광범위하게 확산되도록 하기 위해 위원회는 종합적인 계획 하의 체계적인 인권교육을 전개해 나가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위원회는 2006년 초 인권교육을 강화하는 조직개편을 단행하여 인권교육 강화에 대한 위원회의 강한 의지를 표명하였다. 이러한 의지 하에 위원회는 향후 3년간 다음과 같은 목표 하에 인권교육 활동을 전개해 나가자 한다. 첫째,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인권교육 실시를 위한 기반을 구축한다. 이를 위해, 인권교육 실태조사 및 연구기반을 조성하고, 분야별 중·장기 인권교육 종합계획을 수립하며, 인권교육에 관계하는 다양한 기관/단체들과의 관계망을 형성한다. 둘째, 학교교육 과정과 공공분야 종사자에 대한 인권교육을 의무화하고,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의 인권교육을 강화하는 등 인권교육의 제도화를 추진한다. 셋째, 다양한 인권교

육 프로그램 및 콘텐츠를 개발·보급하고, 사이버 인권교육 강화, 인권교육 전담 교육원 설립 추진 등 사회 각 분야에서 인권교육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실행체제를 구축한다.

목표 5. 위원회의 역량 강화

위원회는 지난 3년간 위헌의 시비 속에서도 파리원칙이 천명한 국가인권기구의 정체성인 무소속·독립기관으로서 자리매김하기 위하여 끊임없이 노력해왔다. 이러한 노력으로 행정부 내에서는 전례가 없던 무소속 독립기관으로서의 국가인권위원회가 인식된 측면이 있지만, 대 국민 위원회의 위상은 여전히 불명확하며 위원회의 독립성은 행정부를 비롯한 외부기관의 지적과 비난에 취약한 상황에 놓여있다.

위원회는 국민들에게 인권문제를 적극적·효과적으로 해결하는 믿음직한 대안적 권리구제 기관,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사회적 토대의 발전을 이끄는 기관, 인권 영역에서 전문성과 리더십을 발휘하는 능력 있는 인권전문 기관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 향후 3년간 이에 필요한 위원회의 위상과 역량을 갖추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이를 위해 위원회의 독립성 및 전문성을 제고할 것이고, 보다 투명한 운영을 통해 국민적 신뢰를 확보할 것이다. 나아가 국내외의 협력 체제를 강화하여 위원회의 역할을 극대화할 것이다.

마. 실천계획(Strategies)

목표 1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의 인권보호 기능 강화

1.1. 사회권 관련 정책개발을 통한 인권영역의 확장

- 1.1.1. 사회권 상황실태조사와 그 활용
- 1.1.2. 인권영역확장을 위한 연구역량 강화
- 1.1.3. 핵심 사회권 영역에 대한 정책개발

1.2. 차별시정 기능 강화

- 1.2.1. 차별금지법 제정
- 1.2.2. 차별 사유별/영역별 판단기준 정립
- 1.2.3. 조정기능 활성화 등 차별 피해자 구제방법의 다각화

1.3.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를 위한 지원체계 구축

- 1.3.1. 맞춤형 인권상담체계 구축
- 1.3.2. 소송지원 체계 구축
- 1.3.3.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 보호를 위한 관련기관/단체 간 협력 연계체계 촉진

세부목표 1.1. 사회권 관련 정책개발을 통한 인권영역의 확장

위원회는 향후 3년간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를 위한 권리 증진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다할 것이다. 이것은 소위 사회권 분야에 대한 집중적인 정책개발과 그를 위한 실태조사와 연구역량의 강화로 나타난다. 위원회가 가진 물적 인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백화점식의 사업을 전개하기보다 이 시기에 가장 시급한 사회권 영역을 전략적으로 선택하여 위원회의 역량을 집중할 것이다.

실천계획

1.1.1. 사회권 상황 실태조사와 그 활용

인권위법에 의해 위원회에 위임된 인권상황 실태조사 기능은 두 가지 측면에서 유효하다. 사회의 그늘에 가려진 소외계층의 열악한 인권상황을 세상에 알림으로서 사회적 관심을 유도 할 수 있으며, 한편으로는 과학적인 조사를 통해 특정집단이 가지고 있는 인권상의 문제점과 그 것들을 시정하기 위한 정책의 필요성에 대한 논리적 근거들을 제공한다.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방식으로 수행된 조사·연구는 그 것들에 기초하여 개발된 정책들을 추진함에 있어 사회적 설득력을 제공할 것이다.

위원회는 인권상황 실태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사항에 유념하고자 한다. 첫째 향후 3년간 사회권 분야에서 가장 시급한 분야로 인정되는 영역의 인권상황실태조사에 주력한다. 이를 위해 위원회는 주력해야 할 사회권 분야의 신중한 선택을 하도록 한다. 둘째, 실태조사의 기본적 방법론은 권리에 기초한 접근방법에 주력하고자 한다. 실태조사를 통해 국가의 최저핵심 의무를 발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이에 기초하여 위원회는 개인의 사회권을 확인할 것이다. 셋째, 실태조사의 결과가 정책 개발에 충분히 활용될 수 있도록 종합적인 계획 하에 실시한다. 실태조사를 위한 실태조사는 지양할 것이며, 정책권고를 전제로 업무를 수행하면서 그 속에서 실태조사를 실시할 것이다.

1.1.2. 인권영역 확장을 위한 연구역량 강화

설립초기 위원회는 사회적 요청에 의해 자유권 영역에 역량을 집중하였다. 지금도 자유권 영역의 중요성은 여전하지만 위원회에 대한 사회적 요구는 사회권 영역의 정책개발에 특별한 관심을 촉구한다. 이러한 요구에 부응하여 위원회는 2006년 초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권고안을 정부에 제출하면서 사회권 영역에 특별한 관심을 표명한 바 있다. 그러나 이러한 새로운 인권영역의 확장에는 반드시 위원회의 연구역량의 확보가 전제되어야 한다. 구호성 정책

개발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사회권 영역의 전문적 연구가 선행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를 위해 위원회는 사회권연구포럼 등을 운영하면서 내외부의 전문가들의 연구역량을 촉진하고 다양한 인권활동가, 정부관계자 그리고 국제인권기구와의 협력관계를 통해 연구역량을 강화 해 나갈 것이다.

1.1.3. 핵심 사회권 영역에 대한 정책개발

인권상황에 대한 실태조사와 연구역량의 강화는 결과적으로 위원회의 개입이 필요한 분야를 식별하고 그 분야에 대한 적절한 정책을 개발하는 것으로 연결될 것이다. 하지만 제한된 자원을 가진 위원회로서 일시적으로 모든 분야에 개입하는 것은 가능하지도 바람직하지도 않다. 위원회는 사회권 영역에 대한 정책을 개발함에 있어 위원회의 자원을 가장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개입 우선순위를 설정하고, 우선순위에 따라 단계적으로 접근하는 방식을 취할 것이다. 핵심적 사회권 영역을 설정함에 있어서는 우리나라의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 그룹 중에서 우선적 고려가 필요한 그룹을 선정하는 데서 시작되어야 한다.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권고안에서 제시한 장애인, 비정규직 노동자, 이주노동자 등 11개 그룹은 위원회가 핵심 사회권 영역을 선정함에 있어 우선적으로 염두에 두어야 할 분야이다.

세부목표 1.2. 차별시정 가능 강화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에 대한 인권침해는 이들에 대한 사회적 편견이나 고정관념으로부터 비롯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사회구성원의 이들에 대한 차별의식을 개선하기 위한 활동들을 꾸준히 전개해 나가야겠지만, 다른 한편 차별시정을 위한 제도적 개선은 꾸준히 추진되어야 한다. 규범적인 차원에서 금지되는 차별의 개념을 보다 명확히 하고 차별행위가 발생하였을 때 이를 시정하는 제도적 장치가 완비되어야 한다. 위원회는 이를

위해 최선을 노력을 해야 한다.

위원회는 그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차별 금지에 관한 기본법적 성격을 갖는 차별금지법의 제정을 추진하고, 진정이 제기되었을 때 그 행위가 차별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위원회 결정의 공정성을 높일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는 차별 금지에 관한 구체적 기준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또한 위원회는 차별사건을 다룸에 있어, 피해자가 보다 신속하고 실효성 있는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조정기능 활성화 등 보다 다양한 피해자 구제방법을 추진할 계획이다.

실천계획

1.21. 차별금지법 제정

위원회는 지난 3년 동안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고, 이제 그 노력의 결과로 법안의 시안을 완성하였다. 이 시안에서는 금지된 차별행위의 개념을 명확히 하고, 차별행위 시정기능을 강화하였다. 만일 이 시안이 입법화 될 수 있다면 우리 사회의 평등권은 놀라운 정도로 발전될 것이다. 위원회는 이 시안을 공론화하면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하며 조속한 시일 내에 입법화 될 수 있도록 국회와 행정부를 설득하는 등의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다.

1.22. 차별 사유별/영역별 판단기준 정립

인권위법 제2조는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라 함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종교, 장애 등 19개 항목 등을 이유로 고용 등과 관련하여 차별하는 행위”라고 규정하고 있지만 그 구체적인 개념은 시정기구인 위원회의 해석에 의해 달라진다. 위원회의 성격상 위원의 가치관에 따라 차별기준이 달라질 수 있지만 공정한 판단을 위해서는 사전에 만들어 놓은 일반적 기준

의 필요성 적지 않다. 나아가 이러한 기준은 사회적으로 차별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예방적 기능으로 작용될 수 있다. 위원회는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인권위법상 차별 사유별/영역별 판단기준을 정립하고자 한다.

1.2.3. 조정기능 활성화 등 차별 피해자 구제방법의 다각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2조는 “인권침해나 차별행위와 관련하여 당사자의 신청이나 위원회의 직권으로 조정절차를 시작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은 2005년 국가인권위원회법의 개정 시 조정기능의 활성화를 위해 종전 규정을 개정한 것이다. 이제까지 위원회의 조사·구제 활동은 주로 위원회 중심의 조사를 통한 심의의결 방식의 분쟁해결방식을 취해왔다. 이 기능은 위원회가 인권침해 사건의 판단기관으로서의 위상에 걸 맞는 것이지만 처리기간의 장기화와 처리방법의 경직성을 피하기 어려운 측면도 많았다. 따라서 위원회는 향후 대안적 해결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여 피해자 개개인의 실질적 피해구제를 도모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위원회는 사회정의를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정기능 등 관련법이 허용하는 다양한 방법의 이용을 활성화하고, 나아가 보다 실효성 있는 피해자 구제방법 들을 개발·적용하고자 한다.

세부목표 1.3.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를 위한 지원체계 구축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는 스스로의 인권을 보호하는 데에 한계가 많다. 따라서 위원회는 이들에 대한 특별한 지원체제를 구축하고자 한다. 인권침해의 경우 상담, 진정으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이들의 특수한 환경을 고려한 시스템을 개발할 것이고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권고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소송지원도 고려할 것이다. 나아가 관계기관 및 인권단체 등과 의 긴밀한 협력체계를 형성하여 실질적인 권리 증진을 도모하고자 한다.

실천계획

1.3.1. 맞춤형 인권상담체계 구축

권리구제 접근성이 취약한 사회적 소수자 및 약자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해 인권순회상담버스 운영 및 인권현장 상담사업 등을 통해 찾아가는 인권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인권취약계층에 적합한 상담기법을 개발, 실시하도록 한다.

1.3.2. 소송 지원체계 구축

위원회는 사회적으로 일어나는 인권침해를 발견하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요구는 법률적으로 권고적 성격이라는 한계에 부딪혀 간혹 위원회의 시정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가 발생한다. 따라서 위원회는 위원회의 권고적 성격을 유지하면서도 사회적으로 중요한 사건에서 위원회 결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일부 사건에 대한 소송지원을 고려하고 있다. 위원회의 소송지원이 활발하여 위원회의 결정 사건이 법원에서 승소할 수 있으면 위원회의 권고적 성격은 실질적 구속력을 갖는 의미가 있을 것이고 이는 피해 구제에 일대 전환점을 만들 것으로 기대한다. 이러한 분야는 특별히 기업에서 차별적 처우를 받은 개인이 기업을 상대로 하는 소송에서 빛을 발휘하게 될 것이다.

1.3.3.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 보호를 위한 관련기관/단체 간 협력연계 체계 구축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 보호라는 위원회의 사명은 위원회만의 힘으로는 가능치 않다. 이를 위해서는 관련 정부기관, 비정부단체 나아가 전문가들의 적극적인 협력이 필요하다.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 보호는 통상 인권의 사회권적 측면을 강조하는 것인데 이 분야는 어느 분야보다 연구와 조사 그리고 실천이 필요한 분야이다. 아직 한국 사회의 사회권 분야의 연구는 인권선진국에 비해 큰 발전을 이루었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 학계와 인권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이기도 하다. 따라서 위원회는 이들 분야의 인권증진을 위해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연구 및 실천 역량을 모으는 데에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이러한 분야에서 열심히

연구와 실천을 하는 개인과 단체를 찾아 위원회가 지원할 수 있는 일을 찾을 것이며 관련 기관과의 적극적인 협력으로 한 단계 높은 수준의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 보호를 위한 틀을 만들어 나갈 것이다.

21. 국제인권기준의 국내 적용을 위한 기반 구축

21.1. 정부의 인권NAP의 수립·이행을 위한 자문 및 모니터링

21.2. 국제인권기준에 따른 국내법 실태조사 및 정비

21.3. 국제인권규범의 국내이행을 위한 (제도 및) 관행의 연구

21.4. 제도 및 관행의 정비를 위한 관련기관과의 협력 강화

22 인권현안에 대한 대응능력 제고

22.1. 인권 의제 발굴 체계 확립

22.2. 정책개발 및 대응능력 제고

22.3. 주요재판 및 입법에 대한 적극적 의견개진

세부목표 2.1. 국제인권기준의 국내 적용을 위한 기반 구축

위원회는 우리가 가입한 주요 국제인권조약의 국내적 이행을 비롯한 국제인권기준의 적극적 수용이 우리의 인권상황을 개선할 수 있는 첩경임을 인식한다. 나아가 위원회의 업무도 국제적 수준으로 하루 빨리 성장하여야 한다. 인권에 관련된 제도나 관행을 개선하는 데 보다 능동적으로 위원회의 역량을 투입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해야 하며 그동안 소홀했던 사법기관의 구체적 인권사건에 대한 위원회의 의견개진권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실천계획

2.1.1. 정부의 인권NAP의 수립과 그 이행과정에 대한 모니터링 및 적극적 자문

국제사회가 인권의 보호와 증진을 위해 권고한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인권NAP)의 수립은 한국 사회의 인권발전에 큰 획을 긋는 사업이다. 위원회는 이 계획이 정부에 의해 적절히 수립되어 이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위원회는 인권NAP가 정부에 의해 적기에 수립되고 이후 구체적인 실천이 가능하도록 그 수립과정과 그 이행과정에서 정부의 자문에 성실히 임할 것이며 그 내용과 이행절차가 국제사회의 기준에 맞는 지 여부를 계속적으로 모니터링 해 나갈 것이다.

2.1.2. 국제인권기준에 따른 국내법 실태조사 및 정비

위원회는 우리가 가입한 주요 국제조약이 얼마나 국내에서 실천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국내법의 이행상황을 종합적으로 조사할 필요가 있다. 이 조사를 통해 우리나라의 인권관련 법령의 문제점이 확연히 들어날 것이며, 위원회가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가 드러날 것이다. 위원회는 국제인권기준에 입각한 인권제도의 구축은 결국 국내법의 정비로 귀결된다는 사실에 주목하며 이를 위한 노력을 경주할 것이다.

2.1.3. 국제인권규범의 국내이행을 위한 제도 및 관행의 연구

한국이 가입한 국제인권조약이 국내에서 완전하게 이행되는 데는 많은 노력이 경주되어야 할 것이다. 이런 이유로 위원회는 인권조약이 요구하는 인권수준과 우리의 현실이 어느 정도의 격차가 있는지를 제도와 현장의 관행을 통해 점검해 나갈 것이다. 특히 관행의 연구는 우리의 법령이 대부분은 국제인권조약에 비추어 큰 차이가 없다는 그동안의 선행연구를 고려할

때 좀더 실천적인 의미가 있다고 본다. 단순한 제도적 연구를 넘어 우리의 실생활에서의 인권을 국제적 인권수준으로 향상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더욱 우리나라가 가입한 국제인권규약의 따른 인권침해의 국제적 구제절차인 개인통보제도의 국내적 이행이 어떤 방법에 의해 가능한 지를 연구하는 것은 시급한 과제이다. 이러한 연구를 위해 위원회는 관련기관 및 전문가들과의 협력을 강화할 것이며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위원회는 지속적인 인권 향상을 위한 인프라 구축을 정부에 촉구할 것이다.

2.14. 제도 및 관행의 정비를 위한 관련기관과의 협력강화

위원회는 정부, 입법부, 사법부 등에 국제인권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제도 및 관행의 정비를 계속 촉구하고 이의 이행을 위한 모니터링 활동을 강화할 것이다. 하지만, 인권과 관련한 제도 및 관행의 정비는 결국 해당 기관에서 개선 의지를 가지고 추진해야 할 사항이다. 따라서 제도 및 관행의 정비를 위해서는 관련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 위원회는 제도 및 관행의 정비가 필요한 분야와 관련된 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인권정책관계자협의회 등의 협의 시스템을 강화해 나갈 것이다.

세부목표 2.2. 인권현안에 대한 대응능력 제고

위원회가 국제적인 수준의 인권기구가 되기 위해서는 수동적인 진정사건의 해결이나 법령 검토에 만족해서는 안 된다. 매일 같이 발생하는 인권문제에 대해 보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응해야 하며 인권에 관계된 법령 및 제도 개선에 발 빠른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이러한 대응능력을 통해 위원회는 살아 있는 인권보호의 보루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실천계획

221. 인권의제 발굴 체계 확립

위원회가 능동적인 인권의제를 개발하는 것은 인권보호와 신장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요소이다. 위원회의 임무로 부여된 모든 분야에서 인권의제를 스스로 발견하고 그 해결책을 내놓아야 한다. 위원회는 타 국가기관에서 요청하는 인권관련 법령검토기능에 매몰되지 말고 국가인권정책이라는 큰 틀 속에서 인권정책을 관련기관에 권고해야 한다. 나아가 위원회의 조사구제 기능은 진정사건의 처리에만 국한되지 않고 직권조사 등을 통해 인권침해 현장과 인권침해의 가능성 있는 곳으로 직접 달려가 피해자들을 만나야 한다. 수다한 인권문제에 대해 어떤 것에 위원회가 우선적인 관심을 가져야 하며 그러한 문제에 위원회가 어떻게 대응하느냐는 위원회의 역할에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위원회는 이러한 능동적 인권의제 개발을 위한 조직적 체계를 개발하여 시행할 것이다.

222. 정책개발 및 대응능력 제고

사회적 파급력이 큰 위원회의 인권정책기능은 보다 능동적이고 전문적이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수용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보다 현실적인 정책권고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 위원회는 인권상황실태조사를 함에 있어 정책 권고를 전제로 활용도 높은 주제를 선정하고, 위원회가 중심이 되는 실태조사를 해나갈 것이다. 나아가 위원회의 의견표명이 긴급하게 요구되는 인권현안에 대해 신속한 대응을 위한 위원회의 논의구조를 개선할 것이다.

223. 주요 재판 및 입법에 대한 적극적인 의견표명

인권위법은 위원회의 의견이 사법부나 입법부에 적극적으로 개진됨으로써 인권의 실질적인 신장을 도모하고 있다. 사법부에 대한 의견표명은 구체적인 사건에서 의견서의 제출로 이후

어진다. 이러한 업무는 선진외국이나 국제사법기구의 업무관행에서 국제적 인권단체가 의견 개진을 하는 것과 유사한 것으로 위원회는 이러한 역할과 권한을 최대한 활용하여 사법부의 인권증진 노력을 촉구해 나갈 것이다. 나아가 인권관련 법률이 정부와 국회에서 제·개정 논의 되는 과정에서 위원회가 적극적인 의견을 개진하는 것도 위원회의 기본적인 임무이므로 이에 대한 최선의 방안을 찾아 나갈 것이다.

목표 3

권리구제의 접근성 및 실효성 제고

3.1. 실효성 있는 권리구제 체계 확립

3.1.1. 효과적인 사건처리를 위한 체계 정비

3.1.2. 대안적 분쟁해결 모델 개발·실시

3.2. 인권침해 예방 및 현장성 강화

3.2.1. 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법·제도 개선

3.2.2. 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현장 활동 강화

3.2.3. 기획조사(실태조사, 방문조사, 직권조사) 기능 강화

3.2.4. 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업무유관 기관/단체와의 협력 강화

3.2.5. 지역사무소 확산 및 역할 강화

3.3. 인권 친화적 권리구제 실현

3.3.1. 인권사각지대에 대한 권리구제 실현

3.3.2. 인권친화적인 조사·구제 절차 및 기법 개발

세부목표 3.1. 실효성 있는 권리구제 체계 확립

위원회가 국민들의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한 차별성 있는 권리구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이 위원회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빠르고, 쉽고, 값싸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국민들의 권리 인식 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위원회가 담당해야 할 인권침해 사건은 유형과

내용, 형식에 있어서 점점 다양해지고 있다. 이러한 추세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다양화되는 인권침해 유형에 따라 적합한 구제방법을 개발, 적용하여 권리구제가 보다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국민들에게 쉽고 빠르고 값싼 권리구제 서비스를 제공하여 국민들의 위원회에 대한 만족도를 제고하고, 국민들의 인권이 최대한 보호, 증진될 수 있는 가장 효과적·효율적이며 상생적 갈등해결 방법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권리구제의 영향과 효과가 최대한 광범위하게 미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자 한다.

실천계획

3.1.1. 효과적인 사건처리를 위한 체계 정비

사건의 접수 이후 기초조사 기능을 강화하는 등 접수된 권리구제 사안에 대하여 가장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체계를 정비하여 국민들에게 질 높은 권리구제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위원회는 그동안 처리한 다양한 유형의 진정사건들을 분석 및 체계화하고 조사구제 매뉴얼을 개발·적용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인 사건처리 시스템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

3.1.2. 대안적 분쟁해결 모델 개발·실시

차별사건 및 이해관계의 대립으로 인한 권리구제사건이 증가함에 따라 기존의 일도양단적 판단 방식의 분쟁해결 방식을 벗어나 실효성 있는 대안적 분쟁해결 모델을 개발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법상 조정절차는 대안적 분쟁해결의 한 방법으로 도입된 절차이므로 이 절차의 합리적 운영은 위원회의 큰 과제이다. 위원회는 사법부의 조정절차를 연구하고 외국의 국가인권기구들의 모델과 사례를 분석하여 인권기구의 대안적 분쟁해결의 모델을 적극적으로 개발해 나갈 것이다.

세부목표 3.2. 인권침해 예방 및 현장성 강화

개별 진정사건 처리만으로는 인권침해 예방 및 인권상황 개선에 한계가 있으므로 검·경 등 어느 정도 진정사건 처리 경험을 통하여 인권침해 관련 구조적 문제가 파악된 분야는 실태조사, 방문조사 직권조사를 활성화 하여 인권침해의 원인이 되는 관행, 제도, 인권 침해적 환경 개선에 주력하는 한편, 지역사무소, 지역 인권단체 등과 연계하여 인권침해 현장에서 관련 종사자들 및 수용자들과의 대화, 교육 등을 통해서 실질적인 인권침해 예방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해 나갈 것이다.

실천계획

3.2.1. 인권침해 예방활동 강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

인권침해가 발생하면 피해자 구제에 많은 노력이 소요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회복 자체가 불가능한 경우도 많기 때문에 사전에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 직권조사, 방문조사, 실태조사 실시권한 등 위원회는 이러한 목적으로 구현하기 위한 다양한 수단들을 가지고 있고, 향후 3년간 이러한 수단을 적절히 활용할 것이다.

하지만, 쉼터시설, 병영시설, 미신고 사회복지 시설 등은 인권침해의 가능성이 매우 높은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의 조사대상에서 제외되어 왔다. 위원회는 단계적으로 이들 분야가 위원회의 조사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개정 작업을 추진하고자 한다.

3.2.2. 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현장 활동 강화

심각한 인권침해 우려 상황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진정이 제기되기 전이라도 담당부서에서 직접 현장에 출동하여 상황파악, 현장 긴급 상황에 대한 조치, 인권침해 상황 해소·완화 노력을 기울이는 활동을 강화할 나갈 것이다. 또한 진정제기자체가 어려운 다수인보호시설에 대하여는 주기적으로 현장방문 조사를 실시하여 인권침해 예방 및 개선효과를 높여 나갈 것이다.

3.23. 기획조사(실태·방문·직권 조사) 기능 강화

그동안의 진정사건 처리 결과를 분석하여 필요 영역과 우선순위를 정하여 연도별 기획조사 계획을 별도로 수립·실시함으로써 관련분야의 실태조사, 방문조사 등이 서로 유기적 연관성을 가지고 실시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그동안 충분한 관심을 집중하지 못했던 군대내 인권, 다수인 보호시설 분야의 경우 기획조사를 통하여 문제점을 충분히 파악하여 인권침해 심각성 정도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하여 단계적으로 개선 권고하도록 한다.

3.24. 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업무유관기관/단체와의 협력강화

인권보호와 그 수준의 향상은 위원회의 활동을 통한 피진정기관들의 긍정적 변화를 통하여 이룩된다. 위원회는 법무부 인권과, 경찰청 인권보호센터 등 인권전담부서와의 협조는 물론이고, 영역별로 인권 관련 진정사건 해결 과정이나 인권위 권고 후 그 이행과정에서 관련 피진정기관 및 필요시 인권단체까지 포함된 실무급 협의·협력 관계를 강화하여 형식적인 수용이나 변화가 아닌 실질적인 수용, 변화가 이룩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3.25. 지역사무소 확산 및 역할 강화

인권 문제가 발생하는 현장인 지역사회와의 협력관계를 강화함으로써 국민들의 삶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위원회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한 위원회에 대한 지지기반이 확대될 수 있다. 이를 위해서 위원회는 지역사무소의 조기 정착을 위한 기술적 지원 강화, 지역의 인권현안에 즉시 대응할 수 있는 상시적 연락체계 활성화, 지역사무소를 통한 해당 지자체 및 지역NGO와의 협력사업 등을 추진해 갈 것이다.

위원회는 지역사무소가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지역NGO와의 정책자문회의를 개최하여 지역의 인권현안에 대해 토의하고, 위원회, 지역사무소, 인권NGO 및 시민사회단체 각각의 역할을 인식, 조정을 통해 지역의 인권문제를 해결하도록 하고, 이후 대구 등 주요거점 도시로 확대 운영하여 지역사무소 신설 기반을 마련할 것이다. 그리고 인권문제에 관심이 있는 지방

자치단체들과 지역의 인권문화 확산 및 적극적인 인권보호를 위한 협력체계(MOU 등)를 구축하고, 타 지자체에 자극을 촉발해 나갈 것이다.

세부목표 3.3. 인권친화적 권리구제 실현

위원회는 접수된 진정사건을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처리하고, 인권친화적인 조사 진행 및 실질적인 인용률 제고로 진정인들의 만족도를 높이고, 진정조차 제기하지 못하는 인권사각지대에 있어서는 위원회에서 직접 현장을 찾아가서 인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할 것이다.

실천계획

3.3.1. 인권사각지대에 대한 권리구제 실현

그동안 위원회는 제기되는 진정사건 처리에 역점을 두고 조사를 진행해 온 것이 사실이다. 이는 지나치게 교정시설 수용자, 형사절차 과정에 있는 피의자들의 인권문제에 편중되게 위원회 역량이 투입되었음을 의미한다. 향후 위원회는 진정을 제기하기 어려운, 제기조차 하지 못하는 정신보건시설, 아동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부랑인복지시설, 노인복지 및 의료시설 등에 인력을 배분하여 본격적인 조사를 위한 기반을 확립하고, 이 분야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이끌어 낼 것이다.

3.3.2. 인권친화적인 조사·구제 절차 및 기법 개발

다른 민원처리기관과는 달리 국민 인권 보호의 최 일선에 서야 할 위원회는 인권침해 피해자들의 상처와 분노에 공감하면서 그들의 상처를 치유할 수 있도록 보다 인권친화적인 조사와 권리구제 기법 등을 개발하여야 할 책무가 있다. 조사과정에서도 공감적 경청 등의 상담기법을 활용하고 평화적으로 갈등을 해소하고 권리의 회복과 더불어 심리적 회복을 도모함으로써 관료적 국가기관이 아니라 인간적인 모습을 한 권리구제기관으로 다가설 수 있도록 다층적인 기법을 개발하고 실시할 것이다.

목표 4

인권익식 함양을 위한 인권교육 강화

4.1. 인권교육 기반 구축

- 4.1.1. 인권교육 실태조사 및 연구기반 조성
- 4.1.2.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교육 종합계획 수립
- 4.1.3. 인권교육 관련 기관/단체와의 협력강화

4.2. 다양한 인권교육의 제도화 추진

- 4.2.1. 학교교육과정에 인권교육 의무화
- 4.2.2. 공공부문종사자 인권교육 의무화
- 4.2.3.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의 인권교육 강화

4.3. 국가인권위원회의 인권교육 실행체제 구축

- 4.3.1. 다양한 인권교육 프로그램 및 콘텐츠 개발·보급
- 4.3.2. 사이버 인권교육 강화
- 4.3.3. 인권교육원 설립 추진

세부목표 4.1. 인권교육 기반 구축

위원회가 2005년도에 실시한 “국민인권익식조사”에 따르면, 많은 사람들이 인권교육의 필요성에는 크게 공감하나 인권교육을 받은 경험이 적다고 응답했다. 이 조사결과는 위원회가 인권교육 분야에 더 많은 역량을 투입할 필요가 있음을 말해준다. 위원회는 이러한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최근 조직개편을 통해 인권교육 분야에 인력을 추가로 배치하였다.